

No. 43172

**Republic of Korea
and
Algeria**

Agreement on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's Republic of Algeria. Seoul, 9 April 1997

Entry into force: *19 August 2000 by notification,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*

Authentic texts: *Arabic, English and Korean*

Registration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: *Republic of Korea, 15 November 2006*

**République de Corée
et
Algérie**

Accord de coopération culturelle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t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'Algérie. Séoul, 9 avril 1997

Entrée en vigueur : *19 août 2000 par notification, conformément à l'article 11*

Textes authentiques : *arabe, anglais et coréen*

Enregistrement auprès du Secrétariat des Nations Unies : *République de Corée, 15 novembre 2006*

[KOREAN TEXT – TEXTE CORÉEN]

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

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(이하 “체약당사국”이라 한다)는,

양국간에 현존하는 우호관계를 강화하고, 문화·예술·교육 및 체육 분야에서의 양국관계를 발전·증진시키기를 희망하여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제 1 조

체약당사국은 문화·예술·교육 및 체육 분야에서 다음을 통하여 상호 관계를 증진하고 양국 국민간의 더 나은 이해와 보다 긴밀한 교류를 촉진한다.

- 가. 학자·교사 및 학생 교환
- 나. 기자·작가·화가·음악가·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 촉진
- 다. 운동선수 또는 체육단체간의 교류 및 친선경기
- 라. 청소년 교류 및 양국 청소년 단체간의 협력
- 마. 라디오 및 텔레비전프로그램, 영화, 서적, 정기간행물 및 기타 간행물의 교류 및 배포
- 바. 타방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 촉진
- 사. 예술전람회 및 예술행사의 상호 촉진
- 아. 양국의 대학교·학교·연구소·기술교육학교·과학연구소·박물관 및 도서관간의 협력
- 자.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

제 2 조

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안의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서 타방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강의 및 강좌의 설치를 장려한다.

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안에서 유효한 관계법령에 따라 타방당사국의 문화기관 설치를 촉진한다. “문화기관”이라 함은 문화센터·학교·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여타 기관을 포함한다.

제 4 조

체약당사국은 일방당사국에서 취득한 학위,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당사국에 의하여 학술적 또는 전문적 목적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 및 조건을 강구한다.

제 5 조

각 체약당사국은 그 국민이 타방당사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교과서 및 인쇄자료를 포함한 자국안의 모든 공적인 출판물에 있어서 타방당사국의 역사적·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.

제 6 조

체약당사국은 공적 허가없는 고고학적·역사적 및 예술적 유물의 반출금지를 포함한 각 당사국의 국내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존중한다.

체약당사국은 공문서 보관소, 특히 양국의 문화·역사 및 문명 관련기관의 이용을 촉진한다.

제 8 조

각 체약당사국은 가능한 범위안에서 타방당사국에게 상호 합의한 분야의 학문 또는 연구 장학금을 수여한다. 장학금 수혜자는 각 당사국의 관계부서에서 결정한다.

제 9 조

체약당사국은 자국안에서 유효한 국제협약 및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민의 저작권을 보호한다.

제 10 조

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거나 보조약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한다. 그러한 보조약정은 각서 교환의 형식을 취한다.

제 11 조

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일자에 발효한다.